

2007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 1. 과거 놓친 소득공제 환급받기**
- 2.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 3.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 4. 기본공제**
- 5. 추가공제**
- 6. 다자녀 추가공제**
- 7. 연금보험료 공제**
- 8. 특별공제**
- 9. 기타소득공제**

1. 과거 놓친 소득공제 환급받기

환급 사례로 알아보는 놓친 소득공제 체크 리스트

2002-2006년까지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공제 (장인, 장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포함)

- 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장애인공제, 한도초과 의료비추가공제
- 뇌출혈로 좌측마비 상태인 53세 어머니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기자귀 구입비용
- 친정 부모님 공제신청 하였으나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못 받은 부모님
- 사업자등록증은 있지만 매출이 적어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모님공제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수입임대료 160만원 이하)
-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처남과 거주하는 장인, 장모를 사위가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 공제
-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부모님공제
- 부모님이 사망한 연도도 부모님공제
-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매달 한번씩 방문하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부모님공제
- 부모님이 이혼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친어머니(장모님)
- 부모님이 동생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어 공제받는 줄 알고 미신청한 경우
- 나이가 만53세로 어머니 기본공제는 안되나 의료비, 신용카드는 공제
- 처남이 퇴직 후 사위가 장인 공제
- 아들이 없어 큰아버님 양자로 전입된 경우,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총 네분을 공제
-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모가 호적등본에 미등재 있어 인우보증서로 공제
- 같은 집에 살고 있으나 세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지 않는 장인, 장모님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바빠서 서류를 제때 못 챙긴 경우
- 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유학
- 연금저축이 개인연금저축으로 적용되어 불입액의 40%만 공제된 경우
- 회사 서류제출일 후 12월 말경에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지출
- 국내 및 해외 대학원 등록금
-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연도의 놓친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
- 퇴직이후에 지출한 연금저축공제, 기부금공제, 지역 국민연금납부액
- 구 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 해외 근무 때 회사담당자가 국외비과세소득을 누락하여 공제
- 본인의 장애나 불임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자의로 누락
- 12월에 혼인 신고하여 배우자공제와 부녀자 공제 누락
- 교외, 성당, 절의 기부금이 공제되는 줄 몰라 미공제
-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줄 알고 미기재
- 직장이 있는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미공제
- 남편이 사업자인 세대주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본인명의의 집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불입
- 차량유지비, 식대를 제외한 연봉이 2500만원인 근로자의 결혼, 이사, 장례비용 공제

☆ 자녀공제

- 12월에 출생하였으나 다음해 1월에 출생신고
- 외국국적은 가지거나, 호적에 등재 안 된 재혼한 배우자 자녀도 공제
-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못한 경우
- 이혼으로 아내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이혼으로 친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엄마가 자녀공제
-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 직장에서 자녀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않고 따로 사는 자녀공제
- 20세 초과 대학생자녀가 쓴 신용카드공제
- 자녀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못 받은 장애인 공제
- 자녀의 라식수술비, 치아교정비, 국외교육비
- 외할아버지가 생활비 보태주는 외손주(사위가 학생) 기본공제와 유치원교육비공제

☆ 배우자

-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 12월말에 혼인신고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 외국인인 배우자
- 배우자가 하반기에 입사하여 연 근로소득이 700만원이하
-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다단계판매원은 연수입이 458만원이하, 보험모집인은 444만원이하, 쇼핑몰은 787만원)
- 배우자의 기타소득(대학원연구소소득, 원고료)이 500만원이하
- 배우자가 파트타임직에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공제는 불가하나 이혼 전 사용한 배우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사용액, 의료비 공제

☆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 취업으로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시골에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같이 있다가 지방캠퍼스로 주민등록을 옮긴 처제의 대학등록금
- 같이 살다가 국외유학중인 처제, 처남의 국외교육비(대학원제외)
- 25세 장애인인 생계를 함께하는 동생의 기본공제
- 같이 살고 있는 소득이 있는 동생의 임플란트 치료비용
- 지금은 결혼하여 분가하였지만 결혼 전에 같이 살면서 지출한 동생대학등록금

☆ 과거 연말정산 돌려 받는 방법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낸다.

2. 2007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항 목	종 전	개 정	부연설명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	근로소득자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 - 1인 : 연100만원 - 2인 : 연 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 - 자녀1명 : 공제액 없음 - 자녀3명 : 연 150만원 - 자녀2명 : 연 50만원 - 자녀4명 : 연 250만원	자녀기본공제와 다자녀공제 분리안됨. 맞벌이 부부 tip - 6세이하 자녀의 기본공제와 다자녀공제를 같이 받고 자녀양육비 공제만 분리해서 받을 수 있음.
미용 성형수술비 의료비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에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공제 가능	20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예) 쌍꺼플, 치열교정비, 보철비용, 스के일링, 눈, 코 등 미용성형수술과 모발이식, 비만치료,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불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중 의료비공제 받은금액은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 제외	의료비최제한도(총급여 3%미만)나 최고한도 초과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한 경우 신용카드공제 가능.
취학전 아동 체육시설 학원비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체육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등)추가 - 최소 월단위(주1회이상) 교습과정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 공제대상 체육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시설로서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YMCA등 비영리법인 운영 체육시설 포함)
시간제 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비공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도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허용	혼인,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혼인, 이혼, 별거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공제	혼인, 이혼, 별거 외에 취업을 추가함	당해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가 특별공제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	2007.2.28이후 기한 연장분부터 적용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연령제한 폐지	기본공제대상자 혼인·장례·이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령 : 직계비속 만20세이하, 직계존속 남60세, 여55세이상	연령제한 삭제	20세 초과자의 혼인, 60세 미만자의 장례 등도 소득공제 가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투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투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일몰연장 : 2008.12.31	
정치자금 세액공제	- 10만원 이내 : 전액 세액공제 ※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한 금액을 초과(1.1배)하여 공제(환급)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 이내 : 100/110 세액공제	예)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3.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가능 시기

1차	12.11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2차	12.20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포함 8개

2) 의료비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증빙 자료 제출 거부서를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경우 이므로
=> 의료비공제 받기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을 각각 첨부해야 함.

3) 국세청조회(www.yesone.go.kr)는 본인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해야 하고,

만 20세 초과 부양가족	공인 인증서 有	yesone 접속 - 자료조회 동의
	공인 인증서 無	회사, 세무서, 우편을 통해 <u>소득공제내역 조회 동의신청서</u> 제출

항목별 서비스 여부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공여부
보험료	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납입증명서	○
의료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약국]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영수증	×
	의료용구(구입, 임차) 영수증	×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초중고, 대학(원)]	○
	보육료납부영수증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 수업료	×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	○
개인연금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퇴직연금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현금영수증사용금액(현금영수증홈페이지)	○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

4. 기본공제

항목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본인공제	계속하여 현직장에 근무하는 자	100만원	전사원 공통서류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현직장에 재취업한 자		서류 미제출시 다음해 5월에 전근무지와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직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 근무하는 근로자		두 곳 중 하나만 진행	①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업무자에게 제출하거나 ②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고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외국인 근로자		17% 단일세율 적용 신청자만 작성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부양가족 공제	공통요건 :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① “생계를 같이”의 개념 :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 ②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 : 근로자는 연봉 700만원,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소득 등 기타소득자는 수입금액이 500만원 ③ 배우자, 자녀, 부모님은 따로 거주해도 공제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같이 거주하거나 일시되거만 해당됨. ④ 해당 안 되는 사람 : 백부모, 이모, 고모, 형수, 제수, 며느리, 조카, 삼촌			
배우자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	1인당 100만원	사실혼, 이혼관계, 동거인 인정 안됨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기본공제가 되지 않더라도 특별공제(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에 해당 할 경우 인적사항 기재요망
자녀	1987.1.1 이후 출생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가능 거주에 관계없음	
부모님	부, 장인, 조부, 계부 : 60세이상, 1947.12.31.이전 출생자 모, 장모, 조모, 계모 : 55세이상, 1952.12.31.이전 출생자 (차남, 차녀,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가 공제신청 가능)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음 당해 연도 사망시 공제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공제	
형제자매	① 20세 이하 (1987.1.1 이후 출생자) ② 남 60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자) ③ 여 55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자) ④ 주민등록상 같이 살거나 ⑤ 같이 살다가 취학·취업·치료 등으로 일시되거한 자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처남, 처제, 시동생)	

5. 추가공제

공통요건 :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함				
항목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경로우대	만65세 이상 ~ 70세 미만 (1938.1.1 ~ 1942.12.31출생자)	100만원	경로우대자가 장애인일 경우 중복공제 가능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만70세 이상인자 (37.12.31 이전출생)	150만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200만원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당해연도에 장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됨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or 장애인증명서 or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상이자증명서 (국가 보호처 발행)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등)			장애인증명서 (병원발급)
부녀자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②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미혼인 자녀가 따로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는 경우 공제 가능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자녀양육비	2001년 이후 출생된 자녀가 있는 모든 근로자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공제 가능)	100만원	맞벌이 부부 : 부양가족공제와 분리하여 공제 가능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6. 다자녀 추가공제 (2007년 신설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폐지)

항목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다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자	50만원	맞벌이 부부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 공제만 분리해서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서류로 대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1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4인 이상인 자	250만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5인 이상인 자	350만원		

7.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국민연금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 퇴직 후 납부액도 공제가능 - 입사 전 지역연금 납부액 공제	- 회사에서 대상자 자동반영 - 지역연금 납부 내역서
공무원연금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근로자 부담 기여금	전액		

8. 특별공제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보험료	급여나 상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	* 근로기간 지출금액만 공제 맞벌이 부부 : 계약자 :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 : 배우자 => 양쪽 모두공제 안됨	자동공제		
	계약자와 피부양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u>일반 보장성 보험료</u>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	100만원 한도		보험료 납입증명서 or 보험료납입영수증 or 보험증권 사본		
	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or 수익자로하는 보험 ②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일 것	100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의료비	①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연봉 3% 초과액 전액	* 근로기간 지출금액만 공제 ① 2006.12.1- 2007.11.30까지 지출분 공제 ② 공제 불가 의료비 : 간이영수증, 비의료기관 의료비 ③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 ④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불가 => 2007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 영수증 ① 의료기관 · 약사 등이 확인한 것, ② 건강보험공단 제공 “의료비부담내역서”		
	②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연봉 3% 초과액 500만원까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되어 공제 안됨	
	㉠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령 미달로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의료비가 지출된 경우					
	㉡ 자녀가 결혼, 취업하기 전 지급한 의료비 (혼인신고 전일까지)					
	㉢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매요양원에 지급한 의료비 (사회복지법인에 소속된 요양원은 공제 안됨)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능)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한 경우					
	㉥ 의료용구를 구입/임차한 경우					
	2007 신설					㉦ 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한의원 보약 등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
* 라식수술비, 불임수술시술비 등 비급여항목 공제 가능 * 진단서, 제대혈 보관비, 산후조리원,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공제 안됨.						

8. 특별공제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교육비	본인의 교육비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료, 대학원)	전액	시간제 과정 등록도 공제가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 2007 신설	대학(원) 교육비 납입증명서 (대학원 입학금은 대학원생이 된 후 공제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영/유아 교육비 : 200만원/인 초·중·고 : 200만원/인 대학생 : 700만원/인	* 근로기간 지출금액만 공제 ① 교육비 공제는 인원수 제한 없으며, 실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②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되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는 공제 안됨 ③ 대학원은 공제 안됨	교육비납입증명서 or 공납금납입영수증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형제자매가 같이 살다가 일시되거 한 경우 ① 일시되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② 되거자의 주민등록등본 ③ 교육비납입증명서
	공제가능 교육비 ① 취학전 자녀가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수강 하는 경우 ㉠ 주 1회 이상 실시한 교습과정 ㉡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중복공제 가능 ② 자녀가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③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와 주소지를 같이 하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④ 휴직기간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공제불가능 교육비 ① 입사 전이나 퇴사후에 지출한 교육비 ② 초·중·고·대학생 등이 지출한 학원비, 보충수업료, 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공제 가능) ③ 본인이 결혼 후(분가)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④ 자녀 수시합격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해에 가능			
	자녀가 해외유학 중인 경우 ① 고등학생, 대학생이 국외 소재 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② 유치원, 초·중생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로 ㉠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공제됨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법인에 지급하는 재활 특수교육비	전액	직계존속도 가능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8. 특별공제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a 주택 마련 저축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당해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or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③ 2006.1.1 이후 가입자는 주택 기준시가 3억이하 ④ 본인명의 저축 종류 :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40% 300만원	합하여 300만원	① 2006.1.1이후 저축신규 가입자 국민주택 초과 기준시가 3억 초과 국민주택 2주택 소유 ==> 공제안됨 ② 저축을 불입하다가 연도 중 해지 ==> 공제 안됨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b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③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저축과 연계하지 않은 일반 전세자금대출은 공제안됨)
c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기본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2004.1.1이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③ 주택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④ 15년 이상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거치기간 3년이하)	1,000만원	① 근로자 본인명의 주택과 대출 ② 공동명의 주택이더라도 본인명의 대출의 경우 공제가능 ③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가능 ④ 구주택의 대출금을 승계해도 공제가능 ⑤ 2005.12.31 이전 1주택 2006.1.1 이후 2주택자가 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경우 ==> 공제안됨 ⑥ a + b + c 최고한도는 1,000만원. c 중 2003.12.31이전 차입자는 최고한도 600만원임.	기본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① 2006.1.1 이후 신규 대출자 기본 요건을 만족하고 ② 공시가액 3억 이하 1주택 취득한 경우			기본서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담보물 해당구청 발급)	
	① 2005.12.31 이전 주택 차입하고 기본요건 만족 ② 공시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공제 가능. 기본서류	
	① 2005.12.31이전 2주택자로 기본 요건을 만족하면서 ②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한 경우			계속하여 공제 가능. 기본서류	
	① 무주택자인 세대주 ②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③ 상환기간 15년이상 ④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조건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2007 개정 상환기간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이상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15년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거치기간 3년이하)			2007.2.28 이후 연장 분부더 적용	
	① 12.31 현재 세대주 ② 2003.12.31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③ 주택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④ 10년 이상 15년 미만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600만원	기본서류

8. 특별공제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기부금	법정기부금: 국·공립·사립학교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수재의연금 등		전액	퇴직 후 기부액도 공제가능	① 반드시 본인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기부금 공제 안됨) ② 200만원이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명세서 제출 ③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함.
	지정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공익기관단체기부금, 노동조합비 등 50% 한도 기부금 :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30% 한도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0% 한도 기부금 : 노동조합비·교원단체회비·종교단체·한국자유총연맹 등		입사 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능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의 10%, 20%, 30% 한도내 전액공제		
	2007 개정	정당기부금이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을 환급. 즉, 기부한 액수만큼 세액공제 정당기부금이 2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9원과 주민세 9,090원 환급. 10만원초과분 100,000원은 소득공제			
혼인·장례·이사	공통요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혼인비용	2007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 연령제한 없음	각 사유별 회수당 100만원 예) 결혼 1회 이사 1회 => 200만원 공제	공제 안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21세 자녀의 혼인 · 소득이 있는 60세 어머니의 재혼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공제 되는 경우 ① 소득이 없는 21세 자녀의 혼인 ② 소득이 없는 54세 어머니의 재혼				
장례비용	2007 개정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연령제한 없음		각 사유별 회수당 100만원 예) 결혼 1회 이사 1회 => 200만원 공제	공제 안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60세 아버지의 사망
	공제 되는 경우 ① 소득이 없는 21세 자녀의 사망 ② 소득이 없는 54세 어머니의 사망				
이사비용	① 같이 살던 가족모두가 주소지를 이동한 경우 ② 미혼남녀가 각각 독립하여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신혼집으로 이사한 경우 각각 공제 ③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 200만원 공제 ④ 주택매매(임대차)계약서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전·출입 사실만 확인되는 경우 => 이사관련 증빙(영수증) 첨부시 공제 가능 ⑤ 전입신고를 하고 이삿짐을 근로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				결혼으로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여 모두가 단독세대주였으면 2명 모두 결혼, 이사비용 가능 단, 분가의 경우는 이사비용 불가
표준공제	상기 특별공제 중 합계액이 100만원 미달되는 근로자		100만원		일괄 자동반영

9. 기타소득공제

대상	공제요건	공제금액	참고사항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	불입액 40% 72만원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 통장사본
연금저축	2001.1.1 이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	300만원	입사 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능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퇴직 후 저축액도 공제가능)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3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300만원 한도 적용	제출서류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고 국세청 소득공제증빙서류의 표시금액으로 대체
투자조합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소득금액 50%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우리사주출연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경우	400만원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발행)
신용카드	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연령제한 없음) ② 2006.12.1~2007.11.30까지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물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 15%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500만원)	의료비 지출액이 3% 최저한도 미달이나 500만원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에 금액 기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수강료를 지로용지에 의해 납부한 금액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확인서
	· 신용카드공제 안 되는 경우 ① 의료비 공제액 => 2007 개정 ②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③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④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⑤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⑥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 ⑦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결혼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⑧ 근로기간 외에 사용한 금액			